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6263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동부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7. 피고로부터 분할 전 화성시 B 답 1,184㎡(이하 '이 사건 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지'라 한다)에 관하여 싱크대 제조(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하기 위한 공장 부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변경(명의변경, 허가목적 및 건축계획 변경)을 허가받았다(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변경허가'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9.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5. 9. 21. 피고에게 그 취득세 25,575,000원 등 합계 28,985,000원의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2.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인 21,738,750원을 감경하고,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1.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2.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창업일인 2015. 9. 18. 위 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의해 취득세를 감경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창업일'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1668 판결 등 참조).

창업일의 통상적인 의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지·목적 및 관련 법령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조 제2호가 규정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 사업의 개시일은 개인인 창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개시일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창업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것이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밑줄 추가).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옮겨온 것인데(개정이유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창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 개시 여부 및 그 개시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제6조 제6항 제1호, 제3호, 제4호).

㉢ 당초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동수원세무서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개업일을 2015. 10. 8.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개업일을 2015. 8. 12.로 정정하여 등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원고의 창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개시일인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 2015. 9. 18. 이전에 싱크대 제조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재산은 중소기업이 창업한 이후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등 참조), 법문의 한계를 벗어나 취득의 주체인 '창업한 중소기업'에 '창업 예정인 중소기업'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② 이처럼 위 조항의 감면 주체를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③ 취득세 감면 요건의 충족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창업 이전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정책적 합리성도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10-26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강효원

판사 김현주